
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 인천의꿈* 대한민국의미래
	배포일자 2023년 1월 11일(수) 총 2매		
담당부서 특별사법경찰과	담당자 • 식품위생팀장 • 담당자	이영미 ☎440-3381 주창영 ☎440-3387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 또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“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.” 고 말했다.

<관련사진> 농산물도매시장



인천 특사경, 설 명절 농·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
- 이달 20일까지 제수·선물용품 유통판매업소 집중단속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밝혔다.

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1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, 대형유통업체,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·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.

중점 단속 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▶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▶특정지역(시·군)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▶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.

아울러,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,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·가공·판매하는 행위, 거래내역 허위·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.